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검 토 보 고 서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소 관 】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025.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박 희 석

목 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I. 개 요

1. 총 괄	1
(1) 편성배경	1
(2) 편성 기본방향	1
2. 추경안 편성에 따른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3
(1) 총괄	3
(2) 일반회계	4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

II. 검토의견 8

1. 무역보험기금출연(일반회계): 수출애로기업 등의 지원 강화 및 안정적인 기금배수 목표 설정 필요	8
2. 수출지원기반활용(일반회계): 공급기업 확보 및 병목현상 방지 필요 ..	14
3.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일반회계): 기반시설 비용지원 확대 결정에 부합하도록 지침 개정 필요	22

4.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일반회계): 대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 명확화 검토 필요 등	27
5.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일반회계): 신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필요 등	31
6.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일반회계): 유사 컨설팅 사업과 연계·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47
7.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에특회계): 추경안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광종의 비축 예산 감액 조정 필요 등	52
8. 투자유치기반활용(지특회계): FDI 실제 투자 및 국내복귀투자 신속 달성 필요	58
9. 산업단지환경조성(지특회계):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 검토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67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I. 개 요

1. 총 괄

(1) 편성배경

현재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관세 피해로 인한 수출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2) 편성 기본방향

정부의 금번 추경안 편성 기본방향은 ①통상리스크 대응, ②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무역보험기금출연 3,000억원, 공급망 안정 및 핵심광물 비축 확대 예산 2,154억원,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지원 888억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총 6,531억원을 증액하였음.

그리고,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 1,170억원,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전력망 지중화 비용 626억원, 산업단지 고도화 511억원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06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제1회 추경안 증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사업명	'24년 예산	'25년 본 예산 (A)	'25년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B-A)	%
일반 회계	무역보험기금출연	45,000	80,000	380,000	300,000	375
일반 회계	수출지원 기반활용	86,394	91,364	180,171	88,807	97
일반 회계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2,279	3,117	5,017	1,900	61
일반 회계	반도체 아카데미구축	4,260	4,710	5,710	1,000	21
일반 회계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	25,213	142,221	117,008	464
일반 회계	팹리스기업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	7,210	9,510	2,300	32
일반 회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	-	62,580	62,580	순증
일반 회계	친환경차보급 촉진 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2,490	5,494	7,513	2,019	37
일반 회계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사업	1,901	4,547	90,545	85,998	1,891
일반 회계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869	6,688	14,088	7,400	111
에특 회계	한국광해광업 공단출자	251,762	200,727	400,157	199,430	99
지특 회계	투자유치기반조성	357,914	364,246	403,796	39,550	11
지특 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	397,197	331,378	382,478	51,100	15
합 계		1,157,066	1,124,694	2,083,786	959,092	85

* 백만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였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총지출 기준)

2. 추경안 편성에 따른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1) 총괄

금번 제1회 추경안을 통한 총수입 및 총지출 증감내역을 보면, '25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 11조 3,443억원 대비 9,591억원(8.4%)이 증액되었으며,¹⁾ 총수입은 변동 없음²⁾.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음.

'25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예산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B-A)/A
합 계	74,592	69,375	69,375	-	-
일반회계	1,579	1,803	1,803	-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708	23,917	23,917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24,398	635	635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02	530	530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	-	-	-
전력산업기반기금	35,301	30,625	30,625	-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603	616	616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1,602	11,249	11,249	-	-

* 편의상 기금 수입도 포함하여 세입예산안이라고 표기하였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총수입기준(금융성기금 제외³⁾)

1)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수입 기준에는 미포함

2) 순계 기준으로, 내부거래가 제외된 총계 기준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035억원,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는 총 6,69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방산물자 수출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에 3,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에 88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그리고, 미국 통상조치에 대응하는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아웃리치 활동 강화를 위해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도체 관련 비수도권 교육장을 확충하고자 ‘반도체아카데미’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사업에 1,17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또한,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을 지원하고자 ‘팹리스기업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에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지원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에 625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차 기업 대상 운전자금 대출을 위해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사업’ 사업에 20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3) 무역보험기금 : '25년 추경 총계수입 5,780,733백만원(일반회계 전입금 380,000백만원)

마지막으로, 요소 수입선 다변화 등을 위해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 사업에 859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 지원을 강화하고자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사업에 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5년도 일반회계 추경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본예산(A)	’25년 제1회 추경안(B)	증감(B-A)	
					%
【일반회계】	150,193	228,343	897,355	669,012	293%
무역보험기금출연	45,000	80,000	380,000	300,000	375%
수출지원 기반활용	86,394	91,364	180,171	88,807	97%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2,279	3,117	5,017	1,900	61%
반도체 아카데미구축	4,260	4,710	5,710	1,000	21%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	25,213	142,221	117,008	464%
웹리스기업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	7,210	9,510	2,300	32%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	-	62,580	62,580	순증
친환경차보급 추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2,490	5,494	7,513	2,019	37%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사업	1,901	4,547	90,545	85,998	1,891%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869	6,688	14,088	7,400	11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총 1,99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희귀금속비축 확대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음.

’25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본예산(A)	’25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51,762	200,727	400,157	199,430	99.4%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251,762	200,727	400,157	199,430	99.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총 90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외투기업 및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에 39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 AX 실증산단 구축 등을 위한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에 5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5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추경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본 예산(A)	'25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55,111	695,624	786,274	90,650	13%
투자유치기반조성	357,914	364,246	403,796	39,550	11%
산업단지환경조성	397,197	331,378	382,478	51,100	1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I. 검토의견

1. 무역보험기금출연(일반회계): 수출애로기업 등의 지원 강화 및 안정적인 기금배수 목표 설정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무역보험기금출연’(1138-881)은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800억원 대비 3,000억원(375.0%) 증액된 3,800억원이 편성됨.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무역보험기금출연	45,000	45,000	80,000	380,000	300,000	37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② 수출애로기업 등의 지원 강화 및 안정적인 기금배수 목표 설정 필요

정부는 「무역보험법」 4)에 따라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수출금융

4)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제31조(기금의 조성)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 본예산에는 ‘방산물자 수출지원’을 위한 400억원, ‘RG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400억원 등 총 80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본예산 확정 이후 폴란드 방산 K2전차 등 방산수출계약 추진현황과 조선산업의 대미 수주 규모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해 ‘방산물자 수출지원’에 대하여 1,000억원 증액한 1,400억원, ‘RG 특례보증 지원’에 대하여 500억원을 증액한 900억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생김.

그리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부과 및 유예조치 등으로 공급망 재편성 및 수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의 보증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수출액 감소를 보완하고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보증 200억원, 보험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며, GVC⁵⁾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자 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구 분	(본예산→) 추경안	보험공급액 목표
가. 방산물자 수출지원	(400억원→) 1,400억원	1,400억원 × 30배(운용배수) = 4.2조원 (+1,000억원 × " = + 3조원)
나. RG특례보증	(400억원→) 900억원	900억원 × 5배(운용배수) = 4,500억원 (+500억원 × " = + 2,500억원)

5)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구 분	(본예산→) 추경안	보험공급액 목표
다. 美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중企 무역 보험 긴급 지원	(순증) 1,500억원	1) 수출애로기업 핀셋 유동성 특별지원 : 800억원(추경) × 12.5배 = 10,000억원 2)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수출신용보증) 200억원 × 12.5배 = 2,500억원 - (단기수출보험) 300억원 × 30배 = 9,000억원 3) GVC 안정화 지원 : 200억원 × 12.5배 = 2,500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추진 중인 폴란드 방산 K2전차 수출 2차 계약 등의 추진현황을 고려하면 ‘방산물자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3조원의 보험이 추가공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RG 특례보증’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상반기 수요조사를 전제로 2,000억원 공급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다시 수요조사한 바에 따르면 2,500억원을 추가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통상 수출보험 수요는 수출 규모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정부가 무역보험체결한도 동의안 제출⁶⁾시 적용한 수출증가율 전망치 5.6%⁷⁾에 비해 2024년말 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의 2025년도 수출증가율 전망은 각각 1.7%(2024. 11.), 1.4%(2024. 12.)로 낮음.

6) 의안번호 220353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정부 제출, 2024. 9. 2.

7) ('25년도 수출증가율 5.6% 적용종목)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수입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기반보험

* 그 외 4개 종목(이자율 변동보험, 서비스 종합보험, 해외공사 보험,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은 향후 수요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으로 산출

이 같은 수출증가율 전망 하락을 고려하면 방산, 조선 등 일부 특정 산업 분야를 제외한 일반적인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의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시 예상한 것보다 수출보험 수요가 증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무역금융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추경안에 따른 수출애로기업에 대한 사업별 지원대상, 내용 등의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애로기업 핀셋 유동성특례지원’은 무보 일반보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美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위축, 비용상승,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산업생태계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이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반 약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기업 수출저변을 확대하려는 사업이며,

‘GVC 안정화 지원’은 수입자금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하여 공급망 재편 추세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로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이 큰 것으로 보임.

수출애로기업 지원 사업별 계획(안)

사업 유형	수출애로기업 편셋 유동성 특례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GVC 안정화 지원
지원 대상	美 관세 피해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중견기업(4.5만개사) 中 실제 재무악화가 발생하여 무보 일반보증이 어려운 기업	연간 수출실적 1백만불 이하 수출 중소중견기업 (3.5만개사)	무역보험 이용실적이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4.5만개사)
지원 내용	- (보증비율) 최대 95% - (보증료율) 최대 50% 할인 - (보증한도)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	① 수출신용보증 확대 - (보증한도) 1.5배 우대 - (보증료율) 최대50%할인 ② 단기수출보험 확대 - (보증한도) 1.5배 우대 - (보증료율) 최대90%할인	- (보험한도) 1.5배 우대 - (지원품목) 지원대상 품목 확대 ※ 원유 등 주요자원 및 시설재 → 사치재 제외 모든 품목
추경안	800억원	500억원	200억원
보험 공급	1조원	1조 1,500억원	2,500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의 통상·수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보험공급 목표대로 수출애로기업 등에 대해 보험공급액을 2조 4,000억원 늘릴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기금총액 및 적정 수준의 기금배수를 기반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무역보험기금 경영실적 및 전망(추경안 기준)에 따르면 기금배수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어 2025년 기금배수는 21.9배일 것으로 예상됨⁸⁾. 다만, 기금총액 중 자체수입이 최근 증가한 것은 보험료 수입 증가와 더불어 2022년 이후 美 증시 호황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수익의 일시증가에 기인

8) 최근 10년간 기금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므로, 이 같은 자체수입 증가추세가 당연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리고 무역보험기금이 국내 유일한 보험형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이라는 특성상 국내 다른 보증기금과 적정 기금 배수를 비교·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⁹⁾.

무역보험기금 경영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배, %)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기금총액(A)	24,534	30,385	34,118	39,187	47,756	54,360
정부출연금	5,731	3,500	912	500	700	3,800
자체수입	6,711	7,456	8,668	11,927	14,747	14,220
유효계약액(B)	733,979	803,900	865,524	1,009,241	1,034,558	1,191,060
기금배수(B/A)	29.9	26.5	25.4	25.8	21.7	21.9

주: 1. 기금총액: 기금의 순 자산

2. 유효계약액: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책임이 남아있는 책임잔액

3. 기금배수: 기금총액 대비 유효계약액 비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금 운용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금배수를 안정화하는 한편, 연구용역 등으로 적정 기금배수 목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유효 계약액	895,470	873,534	849,646	719,282	743,251	733,979	803,900	865,524	1,009,241	1,034,558
기금총액	13,515	11,897	12,292	14,766	19,696	24,534	30,385	34,118	39,187	47,756
기금배수	66.3	73.4	69.1	48.7	37.7	29.9	26.5	25.4	25.8	21.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9)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배수를 OECD 국가들의 ECA 평균 수준(약 16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수출지원기반활용(일반회계): 공급기업 확보 및 병목 현상 방지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수출지원기반조성’(1139-307)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해외지사화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현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913억 6,400만원 대비 888억 700만원(97.2%) 증액된 1,801억 7,100만원이 편성됨.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B-A)	%
수출지원기반활용	86,394	86,394	91,364	180,171	88,807	97.2
통합지원사원	56,658	56,658	61,628	150,435	88,807	144.1
중견기업 수출 역량강화	25,000	25,000	25,000	25,000	0	0.0
산업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31,080	31,080	36,050	120,750	88,807	246.3
관세대응 바우처	-	-	-	84,672	84,672	순증
통합관리	578	578	578	578	0	0.0
관세대응 119	-	-	-	4,135	4,135	순증
개별지원사원	29,736	29,736	29,736		0	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② 공급기업 확보 및 병목현상 방지 필요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역사업인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에 360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세부 지원유형, 지원요건 및 바우처 지원한도는 각각 다음과 같음.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유형 및 지원요건 등

사업유형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한도 ※ 최소 2천만원
소재·부품·장비	[진입]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5천만원 [성장] 7천만원 [확장] 1억원
그린		[진입] 3천만원 [성장] 5천만원 [확장] 5,500만원
소비재		
서비스	[진입]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50억원 미만 [확장]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 평균 산정 기간: 2021~2023년

주: 국고보조율(사업유형 및 단계별 공통) (중소) 70%, (중견) 50%

자료: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024. 12. 18.)

그런데 미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 4월 5일(토)부터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기본관세를 부과하였고, 4월 9일(수)부터는 한국(25%) 등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예정(4.2. 발표)하였다가 이를 90일간 유예(4.9. 발표)하고 있음. 이 같은 관세 정책의 비일관성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 대미 수출을 위한 해외 생산거점을 보유한 기업 및 중간재 공급 등 간접 수출기업은 각각 판매량 위축 가능성 및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함.

미 주요국 관세현황

국가	MFN	협정세율	상호 관세	최종 관세
중국	0~10.0%	-	125%	152.5~255%*
멕시코	-	0% (USMCA)	0% (USMCA)	0% (USMCA)
베트남	0~10.0%	-	10%	10~20%
EU	0~10.0%	-	10%	10~20%
대만	0~10.0%	-	10%	10~20%
일본	0~10.0%	-	10%	10~20%
한국	-	0% (한-미FTA)	10%	10%
캐나다	-	0% (USMCA)	0% (USMCA)	0% (USMCA)
인도	0~10.0%	-	10%	10~20%

주: * 상호관세에 301조 관세(7.5~100%) 및 대중 관세(20%)를 더한 값임

자료: 「美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관련 내용」, KOTRA글로벌 이슈모니터링, 2025. 4. 10.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도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 특히 종전의 서비스(14개 메뉴, 7,800여개)에 더해 “관세대응 패키지”를 신설하여 피해기업이 집중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으로 696개 기업을 선정¹⁰⁾하여 본예산 360억 5,000만원 중 대부분(280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 중 잔액 80억원으로 4월 현재 ‘관세대응 패키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여, 2022~2024년간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對캐나다, 멕시코

10)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024. 12. 18.)에 따라 2월 선발, 3월 협약 체결 완료

중간재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선정하는 중임. 4월 15일까지 503개 기업이 이를 신청하였고, 약 200여개의 기업이 선발·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관세대응 패키지’ 사업유형 및 지원요건 등

사업유형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한도 ※ 최소 2천만원
소재·부품·장비	[진입]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진입] 6,000만원 [성장] 8,400만원 [확장] 1억 2,000원
그린		
소비재		[진입] 3,600만원 [성장] 8,400만원 [확장] 1억 2,000원

주: * 평균 산정 기간: 2022~2024년

1. 국고보조율(사업유형 및 단계별 공통) (중소) 70%, (중견) 50%

2. 서비스업 지원은 제외, 바우처 발급한도 20% 상향

자료: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제2차 모집공고」(2025. 4. 2.)

추경안은 이에 더해 약 2,000개의 기업에 대해 현재 모집중인 관세 대응 패키지와 같은 바우처를 846억 7,200만원으로 제공하고, 관세대응119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1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함.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 추경안 산출내역

내내역 사업	산출근거
관세대응 바우처	84,672백만원 = 1,997개사 × 61백만원(최대 1.2억 × 평균지원을 약 51%) × 69%(보조율 평균)
관세대응119 통합지원센터 운영	- 4,135백만원 ※ 국내 : 2,885백만원, 해외 : 1,25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4월에 추진된 ‘관세대응 패키지’는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중간재 공급기업은 캐나다·멕시코 직수출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업 분야 지원은 배제하였는데, 추경안 확정 이후 재추진할 ‘관세대응 패키지’는 기업범위 및 지원분야 등을 조정할 계획임.

그런데 추경안 편성내역에 따라 2,000여개 기업이 추가 선정·지원될 것을 고려하면, 동 내역사업은 기존 바우처의 수요기업 696개, 4월 현재 선발 중인 관세대응 패키지 수요기업 200여개를 합한 총 2,900개의 기업을 지원하게 됨.

2024년에는 823개의 수요기업¹¹⁾에 대해 14개 분야의 총 2,183개 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했는데¹²⁾, 2025년에는 수요기업 수에 비례하여 서비스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공급기업은 신규로 발굴된 해외 현지 파트너사 285개를 포함한 2025년 3월말 기준 2,485개(전년대비 13.8% 증가)에 그치므로, 향후 수요기업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실제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병목현상 또는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11) 중견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따라 선발된 327개기업도 동일한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총 1,150개 수요기업에 대해 2,183개 공급기업(실제 유효 서비스 제공 기업은 843개)이 서비스를 제공함.

12) 참고로 2024년에는 수요기업 1개당 평균 6.6개 서비스를 활용

특히 2024년에도 공급기업은 총 2,183개였지만, 수요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은 843개에 그쳐, 공급기업간 서비스 수요 편차가 컸던 것으로 보임.

또한 관세대응 패키지는 50% 이상 지정된 공급기업(총 562개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정된 공급기업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수출액이 많아 현지 대응이 중요한 기업일수록 해외 현지 파트너사에게 상담 및 컨설팅을 받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관세대응패키지 공급기업 선정결과

□ 국내 수행기관: 총 267개사

- 기존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 중 관세대응 관련 전용 서비스 신규개발 및 제공 가능기업

서비스 분야	수행기관수(개사)
국제운송	176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25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2
조사/일반 컨설팅	13
특허·지재권	27
해외규격인증	24
계	267

□ 해외 현지 파트너사 (KOTRA 해외무역관 발굴) : 295개사 (신규 285개사)

- 법무, 회계/세무, 관세, 조사일반, 물류 5개 세부 분야 현지 전문가 POOL

전문분야	수행기관수(개사)
관세	55 (기존 2)
물류	66 (기존 3)
법무	64 (기존 1)
조사일반	49 (기존 2)
회계/세무	61 (기존 2)
계	295 (기존 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대응119 통합지원센터 지원 등으로 효과적인 상담 및 서비스 분산·제공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공급기업에게 서비스 수요가 분산되어, 수출 바우처사업 서비스 공급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도 4월 현재 본예산을 활용하여 ‘수출바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5,930개사¹³⁾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세대응패키지와 중기부 수출바로 프로그램 비교

구분	산업부	중기부
세부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1139-307)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
내역사업	산업글로벌 진출역량강화	
프로그램	관세대응 패키지	수출바로 프로그램
사업기간	'25.4.1.~'26.1.31.	'25.4.1.~'26.2.28.
운영기관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급한도	20% 우대(기존 바우처 최대 1억원)	기존과 동일(매출액별 차등, 최대 1억)
특기사항	-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개발 - 50% 이상 관세대응 패키지 사용 의무	일반 바우처와 동일
비고	- 수출 중소기업 관세대응 애로 폭넓은 지원 위해 중기부 바우처 기업에도 <관세대응 패키지> 활용 허용 및 범위 논의 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3) (수출바우처)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2배 이상 확대(3,290→8,058개사)

-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바우처 신설(+0.1조원)

구분	본예산	추경	지원내용
관세대응바우처(신규)	-	2,128개사	관세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컨설팅 등 4개 분야 500여개 신규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3,290개사	5,930개사	해외인증, 물류, 보험 등 14개 분야 8,000개 서비스

자료: 「산불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2025. 4. 18.) 첨부-홍보자료, 7쪽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관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세대응 패키지 공급기업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므로, 이 같은 병목현상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공급기업에 대해 수요가 집중되어 병목현상 및 서비스 지연·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기업 발굴 노력 강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일반회계): 기반시설 비용지원 확대 결정에 부합하도록 지침 개정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3171 - 364)은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내 전력, 도로, 폐수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본 예산은 252억 1,3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은 1,170억 800만원이 증액된 1,422억 2,100만원임.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 시설구축지원	-	-	25,213	142,221	117,008	464,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2025년 본예산을 통해 ①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 ② 청주 이차단지 특화단지, ③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④ 울산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4개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249억 3,300만원(기획평가관리비 제외)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안에서는 이들 4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419억 4,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신규로 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폐수 처리시설 확충 지원, ⑥ 평택고덕국제화 계획지구일반산단 2단지
변전소신설 등 2개 단지에 998억 6,000만원(각 499억 3,000만원씩)을
반영하였음.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내역사업별 추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2025년		지원 비율 (%)
			본예산	제1회 추경안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출연	지자체보조	7,130	11,930	50
청주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출연	민간보조	3,593	5,791	40
새만금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출연	민간보조	10,780	17,290	40
울산이차전지 특화단지지원	출연	지자체보조	3,430	6,930	50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 확충	출연	민간보조	-	49,930	정액
평택고덕국제화 계획지구일반산단 2단지 변전소신설	출연	민간보조	-	49,930	정액
기획평가관리비	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280	42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② 기반시설 비용지원 확대 결정에 부합하도록 지침 개정 필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을 그 근거로 두고 있으나, 동 법률은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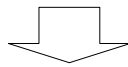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8월 국가 재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원비율, 지원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은 단지별 투자규모 및 수도권·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기반시설 총사업비의 15~30% 수준임¹⁴⁾.

그런데,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 격화와 대규모 투자 촉진의 필요성 증가 등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에 투입되는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2025. 4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을 통하여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30~50%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기준을 상향하기로 발표하였음.

14) 또한, 지원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특화단지당 지원 누적액의 한도를 500억원으로 정하였음.

첨단특화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

구분	단지별 투자 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100조원 이상 (용인·평택)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포항, 울산)	30%	25%
中	10~100조원	3~30조원 (천안·아산)	1~10조원 (청주, 새만금, 울산)	25%	20%
下	10조원 미만 (구미)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20%	15%



구분	단지별 투자 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100조원 이상 (용인·평택)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포항, 울산)	50%	40%
下	100조원 미만 (구미)	30조원 미만 (천안·아산)	10조원 미만 (청주, 새만금)	40%	30%

* ()안은 해당 구분에 속하는 특화단지를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추경 예산의 편성 및 지원 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용인 일반산단에 설치되는 폐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가 약 3.9조원, 평택 일반산단에 설치되는 변전소는 약 2,200억원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의 비용 부담이 크고, 글로벌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정부는 2025년 4월 15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발표 이후 4월 22일 현재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의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현행 법령과 추경 예산안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 예산의 집행 이전까지 신속히 지원기준 고시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임.

15) 지침 개정을 위해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처협의, 규제심사, 행정예고 등 절차 이행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

4.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일반회계): 대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 명확화 검토 필요 등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3171 - 482) 사업은 경기도 용인·평택 지역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건설 중인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추경예산안에 625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	-	-	62,580	62,580	순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2025년부터 2038년까지 ①신평택-고덕#3(13.8km), ②서안성-신이동(8.4km), ③신안성-신기흥2Ⅱ(0.3km), ④신안성-동용인(6.6km), ⑤신원주-신원삼(53.3km) 등 5개 구간에 대하여 345kV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한 비용 1.8조원 중 0.9조원을 민간보조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추경예산은 이들 사업 중 ①신평택-고덕#3, ②서안성-신이동, ④신안성-동용인 3개 구간에 대하여 총 625억 8,000만원을 보조하는 내용임.

② 대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 명확화 검토 필요 등

동 사업은 반도체특화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망을 적기에 준공하고 인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민간의 비용 부담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 1.) 등에서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분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1조 8,000억원의 송전선로 지중화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분 1조 2,645억원의 70%에 해당하는 8,851억원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 추진하여 2025년 4월 14일 확정¹⁶⁾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정부는 2025년 추경예산에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의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보고 관련 사항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3항¹⁷⁾은 동 사업이 국가·경제안보, 안

16)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안)」, 2025. 4. 14.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

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원 기준의 명확성에 관한 사항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은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력공급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제정하여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출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기

· 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준에 따라 각 특화단지별 투자규모, 업종, 수도권·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비율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비율, 지원한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결정된 산정 기준 없이 개별적인 논의를 통해 총 사업비의 70%의 지원 비율을 설정하고 약 8,845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동 사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사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할 것이나,

향후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다른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요구가 추가될 수 있는 점, 다른 특화단지로부터 지원의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제기 등이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여부 및 금액 산정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일반회계): 신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필요 등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3574 - 306)은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 품목 심층분석 등을 통해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 대응하고, 우리 산업의 공급망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45억 4,7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은 859억 9,800만원이 증액된 905억 4,500만원임.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	1,901	1,901	4,547	90,545	85,998	1,89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세부사업 중 추경 예산으로 증액된 내역사업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요소)’(30억 3,100만원→44억 7,100만원, 증액 14억 4,000만원)이며, 신규 내역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700억원) 및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 지원’(145억 5,800만원) 사업임.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 내역사업별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2025년		사업내용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수입선 다변화 지원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3,811	5,251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추가 수입선 확보 지원
공급망컨설팅 지원		300	300	본예산과 동일
글로벌 공급망 정보 분석		436	436	본예산과 동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70,000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기업의 입자설비 투자 지원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14,558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촉진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기업의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절차 마련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 공급망·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입지·설비 투자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핵심품목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소 부장 경쟁력이 취약할 경우 공급망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최근 무역갈등이 지속 심화되는 등 글로벌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국내

첨단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 발굴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경 예산 반영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임.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5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신규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제2항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재난 예방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5년 추경을 통해 신규로 700억원이 편성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이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예산편성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18조¹⁸⁾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단위는 세부사업

1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

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사업과 독립적인 경우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동 내역사업은 국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세부사업과 독립성 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둘째, 투자지원의 국비보조율과 관련한 사항임.

동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700억원은 4,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생산 소부장 기업에 대하여 기업 규모(중소·중견) 및 수도권·비수도권 여부에 따라 30~50%의 기업별 보조율 및 60·40%(비수도권·수도권)의 국비보조율로 입지(토지)·설비(건축, 장비) 비용을 사업 건당 150억원·기업당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 민간자본보조(320-07) : 70,000백만원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70,000백만원)

· '25년 투자(4,000억원) × 기업별보조율(30~50%) × 국비보조율(60·40%)

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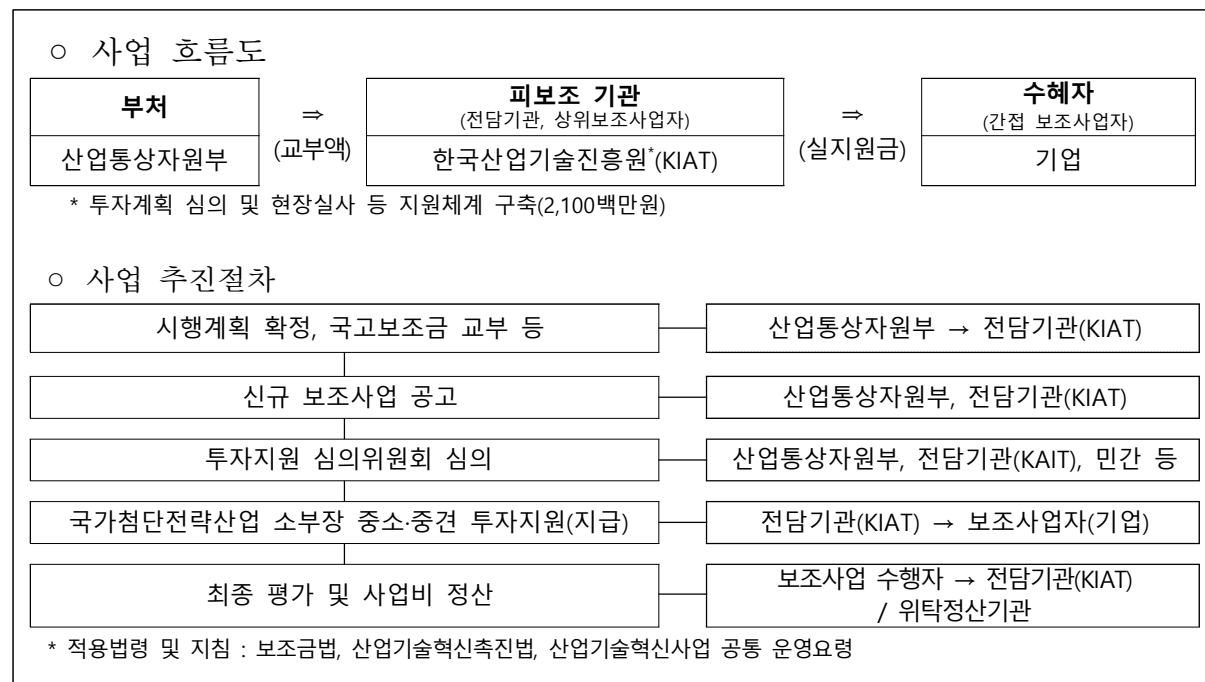
구 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국비 40%)	30%	40%
비수도권 (국비 60%)	40%	50%

* 한도: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이 중 국비보조율을 60·40%로 표현한 것은 나머지 40·60%를 보조하는 주체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그 주체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사업 흐름도 및 추진절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사업흐름도 및 사업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자금을 교부하고 이를 직접 수혜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만 표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등 다른 보조 주체가 참여하는 절차가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 보조 외에 지방비 보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정부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투자가 효과적으로 촉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의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주요 품목에 대한 투자 필요성 및 기업의 투자 의향 등을 반영하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국비 보조만으로도 투자를 하려는 경우까지 폭넓게 감안하여 나머지 지원 주체를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 투자수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및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예산이 매칭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임.

셋째, 동 사업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임.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 제3항은¹⁹⁾는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입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임차 등의 근거는 이 법 및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²⁰⁾.

따라서, 법 해석상 토지 매입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모호한 측면이 있고 토지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그만큼 장비, 시설 구축에 필요한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업 지원 시 토지 매입 지원 항목을 제외하거나 사업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마련 시 토지 매입 지원의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토지 매입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 지원비율에 한도를 두어 장비·시설 투자의 비중을 적정 수준 확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2.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인증·실증
4. 재고확대
5.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 반면, 동 법률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법률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생산시설 구축’은 토지 확보, 건축물 설치, 장비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토지) 확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임.

③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국가안보 관점에서 필수 품목의 생산역량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은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 중 국내 생산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대비 원가경쟁력 열위로 인하여 생산공장의 가동률이 미비한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자립역량을 확보하여 국내 산업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추경 신규 예산으로 14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음.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은 특정국 의존도가 매우 높고, 공급망 위기 시 경제·산업 측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서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소재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소재는 원료의 대부분을 특정국에 의존하고 환경규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수익성 및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생산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향후

있을 수 있는 공급망 충격 등 유사시 물량확보 애로 및 가격변동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2월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구체화한 동 사업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 생산기업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여 가격경쟁력을 보완하고 생산 시설의 일정 가동률을 확보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추경 신규 예산 145억 5,800만원은 소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가동률에 해당하는 물량과 차액(해외 수입단가 및 국내생산원가의 차액) 및 70%의 보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동 사업의 추경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동 비용보조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에 관한 사항임.

산업통상자원부가 동 사업의 법적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는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재고 확대, 그 밖에 공급망 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연구개발 사업, 공동 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²¹⁾.

그러나 추정 사업과 같이 제품의 생산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 이므로, 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령 등 법령상의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의3(공급 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4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또는 “그 밖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임.

21) 구체적인 조항은 참고자료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관련 법령” 참조

둘째, 보조율 및 지원단가에 관한 사항임.

동 사업의 예산은 해외 수입단가와 국내 생산원가의 차액에 70%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나머지 30%의 가격은 생산기업이 부담하거나 수요기업에 전가해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만일 동 가격차로 인하여 생산기업의 적자를 견딜 수 없거나 제품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사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기업의 원가 절감 활동 지원과 수요기업에 구매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²²⁾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보조율 또는 지원단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임.

해당 소재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역시 특정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확보하여 생산기반을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재료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따라서 생산 능력의 유지 뿐만 아니라 원재료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22) 2025년 3월 ‘제4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서는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높은 핵심소재·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국산 제품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하여 기금의 자금 조달원가 수준으로 금융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또한, 생산원가와 관련하여 원재료 수급, 환경규제, 인건비, 생산규모 등의 측면에서 원가경쟁력에 열위가 지속되는 경우 장기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수요처 확보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1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개요

1. 도입 배경

- 첨단전략산업의 핵심품목은 미·네·일 등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공급망·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필요

* (예시) 반도체 장비 점유율('23) : (미) 41% (네) 25% (일) 22% (중) 4% (한), 실리콘웨이퍼용 쿼츠 도가니 등 반도체 핵심 소재 대일 의존도 100% 등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①공급망 안정품목*, ②전략물자** 생산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 입지·설비지원금 지급

*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선정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

- (사업기간) 2025년 ~ 2027년

-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지원방식) 민간자본보조, '25년 700억원(한도 : 전당150억원, 기업당200억원)

구 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국비 40%)	30%	40%
비수도권 (국비 60%)	40%	50%

3. 증액 요구 : 70,000백만원

- '25년 투자 4,000억원 × 기업별 보조율(30~50%) × 국비보조율(40~60%)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기업(중소·중견 限)의 국내투자 확대, R&D 인력 등 고용 창출에 기여, 우리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참고 3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관련 법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2.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인증·실증
4. 재고확대
5.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④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4. 원재료 및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인수·합병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4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관련 법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2.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인증·실증
4. 재고확대
5.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④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4. 원재료 및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인수·합병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 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

6.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일반회계): 유사 컨설팅 사업과 연계·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3736-301) 사업은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 규제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고, WTO/FTA TBT²³⁾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며, TBT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66억 8,800만원 대비 74억원(110.6%) 증액된 140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869	7,869	6,688	14,088	7,400	110.6
해외기술규제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6,039	6,039	5,133	12,533	7,400	144.2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230	230	196	196	-	-
FTA TBT 협상 및 이행강화	186	186	158	158	-	-
FTA TBT 종합지원	1,414	1,414	1,201	1,201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3)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로 비관세장벽 중 하나

② 유사 컨설팅 사업과 연계·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2025년도 본예산에는 ① ‘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내역사업 51억 3,300만원, ②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내역사업 1억 9,600만원, ③ ‘FTA TBT 협상 및 이행강화’ 내역사업 1억 5,800만원, ④ ‘FTA TBT 종합지원’ 내역사업 1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안에는 ‘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내역사업에 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 지원 : ('25) 5,133 → ('25추경) 12,533백만원, 7,400백만원 증액
 - WTO TBT 통보문(미통보문)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 10,558백만원(+6,200백만원)
 - WTO TBT 통보문(미통보문) 기초분석 : 568백만원(+210백만원)
4,475건 × 0.08백만원(2025년 본예산) → 7,100건 × 0.08백만원(2025년 추경안)
 -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 9,990백만원(+5,990백만원)
800건 × 5백만원(2025년 본예산) → 1,998건 × 5백만원(2025년 추경안)
 -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 1,611백만원(+1,200백만원)
 - 해외기술규제(환경안전 등) 조사 및 전파 : 1,385백만원 (+1,000백만원)
10개국×11개품목×3.5백만원 (2025년 본예산) → 35개국×40개품목×0.99백만원(2025년 추경안)
 - 중요 해외기술규제 기업 컨설팅 등 : 200백만원(+200백만원)
 - 규제대응 가이드라인 맞춤형 컨설팅 186백만원
신규 (2025년 본예산) → 62회×3백만원 (2025년 추경안)
 - 해외기술규제 설명회 및 간담회 14백만원
신규 (2025년 본예산) → 35회×0.4백만원 (2025년 추경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으로 ① WTO TBT 통보문(미통보문)의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위하여 62억원이 편성되었고, ② 해외기술규제의 조사 및 전파를 위하여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해외기술규제 관련 기업 컨설팅 및 설명회·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2억원이 편성되었음.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해외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에 대하여 해외기술규제 관련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안을 증액 편성하였음.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기술규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환경 및 안전규제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기술규제 정보의 접근성이 낮고 국내 수출기업의 자체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무역기술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연도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추이

(단위: 건)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통보건	3,352	3,966	3,896	4,068	4,33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

(단위: 건)

국가	우간다	미국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이집트	브룬디	브라질	중국	이스라엘
2023년	412	454	420	312	361	79	267	384	70	75
2024년	426	419	326	314	278	264	246	199	191	9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단위: 건)

10대 수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EU)	대만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023년	454	70	52	31	102	51	23	21	1	4
2024년	419	191	75	66	62	34	24	23	8	5
5대 신흥국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러시아	
2023년	69		55		33		113		18	
2024년	78		65		51		36		1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기술규제 관련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설명회·간담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동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FTA TBT 종합지원’ 사업의 ‘FTA TBT 애로 해소 지원 컨설팅’ 내내역사업과 사업의 목적, 내용, 지원대상 등이 유사하므로, 신규 컨설팅사업의 편성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사업과 연계 또는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 제공 유사사업 비교

구분	해외기술규제 기업 컨설팅 사업 (2025년 추경안)	FTA TBT 애로 해소 지원 컨설팅 사업
내역사업	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사업	FTA TBT 종합지원 사업
사업 목적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수출 관련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수출 및 준비 중인 국내 중소기업
지원 분야	수출 타겟국가 기술규정에 맞도록 제품 생산단계부터 유통, 사후관리 단계까지 자문	제품별·국가별 인증제도 및 절차, 제품 시험 및 표준 정보, 통관·시판품 검사 등 규제 동향 등
사업 내용	-표준, 시험, 인증 분야 전문가가 원포인트 및 전담형 컨설팅 제공	-주제별, 제품별, 국가별 기술규제 전문가 POOL 운영 -사안별 전문가 배정 후 온오프라 인을 통한 1:1 컨설팅 제공 -기업요청 등 필요시 전문가의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전문가 활용의 경우 기업당 최대 3회까지 지원
2025년 예산(안)	1억 8,600만원	1억 8,900만원

7.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에특회계): 추경안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광종의 비축 예산 감액 조정 필요 등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5440 - 304) 사업은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핵심원료인 희소금속²⁴⁾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2,007억 2,700만원 대비 1,994억 3,000만원(99.4%) 증액된 4,00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251,762	251,762	200,727	400,157	199,430	99.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② 추경안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광종의 비축 예산 감액 조정 필요 등

2025년도 본예산에는 ① 희소금속 비축 예산²⁵⁾ 885억 9,400만원, ②

24) 희소금속은 철·구리 등 대량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로서, 우리 정부는 총 35종(56원소)을 희소금속으로 선정하여 관리 중임.

25) 리튬 10일분, 코발트 72일분, 텅스텐 47일분, 희토류 1년분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이관 예산 82억 8,000만원, ③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예산 1,026억 3,700만원, ④ 비축기지 유지보수 예산 1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안에는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및 추가 수출통제 우려 품목 등 안정적 비축이 필요한 희소금속 6종에 대한 비축 예산으로 1,99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비축확대 : ('25) 88,594백만원 → ('25추경) 288,024백만원, 199,430백만원 증액
- ① (비축확대) 중국 등 수출통제 조치 광종(몰리브덴·코발트)
 : ('25) 코발트 32,272백만원 → ('25추경) 206,576백만원 - 몰리브덴·코발트 174,304백만원 증액
 - (요구) 중국이 수출통제 조치('25.2)한 몰리브덴과 DR콩고가 수출중단('25.2)한 코발트 추가 구매로 공급망 불안 대응
 - (산출) 몰리브덴(55.1일본) : 4,015톤 x 41.9백만원 = 168,228백만원 (추경 신규)
 코발트(14.3일본) : 145톤 x 41.9백만원 = 6,076백만원 (추경 증액)
- ② (비축확대) 중국 추가 수출통제 우려 광종(희토류)
 : ('25) 영구자석용 희토류 7,868백만원 → ('25추경) 8,484백만원 - 경희토류 616백만원 증액
 - (요구) 중국 추가 수출통제 우려 경희토류(세륨/란탄) 추가 구매를 통한 비축 확대로 공급망 리스크 사전 대비
 - (산출) 세륨/란탄(28.1일본) 246톤 x 2.5백만원 = 616백만원 (추경 신규)
- ③ (비축확대) 경제안보 목적 관리 필요 광종(리튬·마그네슘)
 : ('25) 리튬 21,614백만원, 텅스텐 26,840백만원 → ('25추경) 68,185백만원,
 리튬·마그네슘 19,731백만원 증액
 - (요구) 특정국 의존도 등이 높아 경제안보 목적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광종 비축 확대로 공급망 안정성 제고
 - (산출) 리튬(10일본) : 1,010톤 x 16.5백만원 = 16,665백만원 (추경 증액)
 마그네슘(13.2일본) : 730톤 x 4.2백만원 = 3,066백만원 (추경 신규)
- ④ (비축확대) 정부 공공 비축량 저조 광종(스트론튬)
 : ('25) 해당사항 없음 → ('25추경) 스트론튬 4,779백만원 증액
 - (요구) 공공 비축량 저조 광종(스트론튬 비축일수 2.7일본) 비축 확대로 비상시 수급 위기 대응 능력 확보
 - (산출) 스트론튬(47.8일본) : 1,770톤 x 2.7백만원 = 4,779백만원 (추경 신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으로 ① 중국 등의 수출통제 광종인 몰리브덴(55일분)과 코발트(14일분)를 비축하기 위하여 1,743억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② 중국의 추가 수출통제가 우려되는 광종인 희토류(세륨·란탄)의 28일분을 비축하기 위하여 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경제안보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광종인 리튬(10일분)과 마그네슘(13일분)을 비축하기 위하여 197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고, ④ 정부의 공공비축량이 저조한 광종인 스트론튬의 국내 수요량의 48일분을 비축하기 위하여 4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중국은 2023년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한 이래 2024년 안티모니, 2025년 2월 텅스텐, 몰리브덴, 비스무스, 텔루륨, 인듐 등 5종에 대하여, 2025년 4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에 대하여 수출통제²⁶⁾를 확대하였음. 한편, 콩고민주공화국은 2025년 2월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코발트에 대한 수출중단을 발표하였음.

이처럼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등 공급망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수출통제 가능성이 높거나 수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희소금속의 비축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안에 비축예산을 편성하였음.

26)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해당 품목의 사전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심사 법정시한 45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장 실사 기간 등은 미산입), 최종 사용자 입증서류 제출 등이 추가된 것으로 상무부 뿐 아니라 필요시 국무원의 심사까지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실제로 45일을 초과하는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음.

희토류, 마그네슘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희토류, 리튬, 마그네슘의 경우 국내 수입액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높음.

비축확대 광종의 국가별 생산량

구 분	1국		2국		3국	
	국가명	점유율(%)	국가명	점유율(%)	국가명	점유율(%)
희토류	중국	69.2	미국	11.5	미얀마	7.9
리튬	호주	36.7	칠레	20.4	중국	17.1
마그네슘	중국	95.0	브라질	2.0	이스라엘	2.0
몰리브덴	중국	42.3	페루	15.8	칠레	14.6
코발트	DR콩고	75.9	인도네시아	9.7	러시아	3.0
스트론튬	이란	39.2	스페인	39.2	중국	15.7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USGS)

비축확대 광종 수입액의 국가별 점유율

구 분	1국		2국		3국	
	국가명	점유율(%)	국가명	점유율(%)	국가명	점유율(%)
희토류	중국	54	일본	21	프랑스	10
리튬	중국	59	칠레	37	아르헨티나	1
마그네슘	중국	78	일본	10	러시아	3
몰리브덴	칠레	33	멕시코	22	중국	17
코발트	DR콩고	23	중국	19	일본	10
스트론튬	독일	58	스페인	22	중국	13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2024 희유금속 원재료 교역분석 자료('23년 수입액) 기준

따라서 수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광물의 비축 확대를 통해 수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 주력산업의 공급망 위

험을 예방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안을 통해 비축할 예정인 6개 광종 중 스트론튬의 추경안 편성 목적을 정부 공공비축량이 저조한 광종의 비축 확대로 수급위기 대응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위의 표에서 스트론튬의 국가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이란이 39.2%, 스페인이 39.2%, 중국이 15.7%를 생산하고 있고, 수입액 기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독일이 58%, 스페인이 22%, 중국이 13%로 국가별 생산량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비중은 각각 15.7%, 13%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공공비축목표 달성은 국가가 중장기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는 점²⁷⁾에서 「국가재정법」상 추경안의 편성요건²⁸⁾

27) 정부는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21.8), 「금속비축 종합계획」(’22.12), 「핵심광물 확보전략」(’23.2)을 통해 신산업 원료광물의 수급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희소금속의 비축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축대상으로 선정된 희소금속 13종 26품목의 비축량을 2021년 국내 수요의 56.8일분에서 2031년까지 100일분(희토류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최대 180일분)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28)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및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²⁹⁾의 예측불가능성 요건(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시급성 요건(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등을 만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추경안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스트론튬의 비축 예산안 47억 7,900만원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희소금속 비축이 단기적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긴급히 이루어지는 경우 구입단가 증가에 따른 비용 증대, 목표 비축량의 조달이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29)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요건 등

8. 투자유치기반활용(지특회계): FDI³⁰⁾ 실제 투자 및 국내복귀투자 신속 달성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투자유치기반조성’(4901-302)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내복귀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기반 고도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3,642억 4,600만원 대비 395억 5,000만원(10.9%) 증액된 4,037억 9,600만원이 편성됨.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투자유치기반조성	357,914	357,914	364,246	403,796	39,550	10.9
토지매입비	56,050	56,050	57,890	57,890	0	0.0
임대료지원	84	84	76	76	0	0.0
현금지원	200,000	200,000	200,000	219,550	19,550	9.8
국내복귀투자보조	100,000	100,000	104,500	124,500	20,000	19.1
국내복귀기업지원	1,780	1,780	1,780	1,780	0	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② FDI 도착액 비율 및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내역사업인 ‘현금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장시설의 신·증설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30)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는 사업임.

현금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일정 요건 ³¹⁾ 충족)
지원요건	고도기술 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등 고려
지원자금	토지·건물 매입비, 임대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한도	40~50% (2025년 한시 50~75%)
국고 보조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60%, 기회발전특구 70% ※ 첨단기술·연구개발(10%)과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분야(10%)는 80%의 한도 내에서 상향 가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최근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관망세가 커지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핵심 공급망 기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동 내역사업을 ‘현금지원 및 유치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함.

그리고 지역순회, 외국인투자행사 개최 및 현지 유치활동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5.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며, 현금지원 예산을 190억원(9.5%) 증액한 2,190억원으로 편성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함.

3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신·증설(제1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신·증설(제2호)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일 것

‘현금지원 및 유치활동’ 사업 추정안 산출내역

비 목	산출근거
민간자본보조	□ 외국인투자 유치: + 190억원 (=2개사 × 95억원) (본예산 2,000억원 → 추정안 2,190억원)
일반수용비	□ 총 3억 9,000만원 순증 ○ 국내 지역소재 既투자 외투기업 대상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지역순회 투자 유치활동: 1억원 (=17개 광역지자체 × 5,882천원(임차료, 도서 인쇄비, 행사비 등)) ○ APEC 정상회의와 연계된 CEO Summit 등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행사 개최: 2억원 (=임차료 195백만원 + 행사비 5백만원) ○ 현지 아웃리치 및 앵커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임차료, 투자신고식 등 행사비 및 부대비용: 9,000만원 (=3회 × 3,000만원)
국외여비	□ 신정부 출범 계기 관세대응을 위한 아웃리치 및 현금지원 대상기업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활동(현지 IR) : 1억 5,500만원 순증(=6명 × 3회 × 8.6백만원)
업무추진비	□ 현지 아웃리치 및 유치활동에 따른 공식행사 경비 : 500만원 순증(≈장관 1회 × 1,500\$ + 차관 각 1회 × 1,000\$ = 3,5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국가보조율을 각각 10%p씩 상향하여 지방비 매칭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현금지원 한도도 5~20%p씩 상향하고 2025년 한시적으로 10~25%p씩 추가 상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자 함.

「현금지원 운영요령」 주요 개정사항

□ 현금지원 최대한도: 투자금액 대비 +5~20%p 상향 (* 2025년 한시적으로 추가 상향)

현 행		개정(2025년 한시적용)	
R&D센터, 국가첨단전략기술	50%	R&D센터(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50% (75%)
		R&D센터(기타), 국가첨단전략기술	50% (60%)
신성장·첨단·소부장	40%	신성장·첨단·소부장	45% (55%)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대규모 고용, 지역특화산업 등	30%	대규모 고용, 지역특화산업 등	40% (50%)

□ 국고보조율: 비수도권·기회발전특구에 대해 10%p 상향

현행(국가:지자체)		개정(국가:지자체)	
수도권	30 : 70	수도권	30 : 70
비수도권	60 : 40	비수도권	70 : 30
기회발전특구	70 : 30	기회발전특구	80 : 20

※ 첨단기술·연구개발(10%)과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분야(10%)는 80%의 한도 내에서 상향 가능

주: 2025년(1. 1. ~ 12. 31.)에 한도산정위원회에서 현금지원의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를 맞아 R&D센터 및 첨단산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치 활동 및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현금지원 운영요령」 개정³²⁾에 따른 지원한도 및 국고보조율 상향³²⁾을 고려하면 본예산 2,000억원보다는 현금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다만, 원활하게 추경안 목표대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해당 지역의 경기 및 고용이 활성화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다른 추경 사업에 비해 경기부양 등의 사업효과가 지연될 수 있음³³⁾.

32) 예를 들어 기회발전특구 내 R&D센터(국가첨단전략산업)는 2024년에 투자금액 100원에 대해 최대 50원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중 국비는 최대 35원임. 2025년에는 최대 75원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중 국비는 최대 60원으로 증가함.

다만, 이는 「운영요령」에 따른 최대한도이고, 실제로는 한도산정위원회 심사에 따라 지원율이 결정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평균 지원비율은 약 19%였고, 2025년 평균 지원비율은 20~21%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지원비율 증가는 1~2%p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3)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안 편성으로 투자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특히, 외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경우,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설명임.

* 외투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규모(도착, 억불): ('22) 35.7 → ('23) 7.6 → ('24) 10.6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우에는 통상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고³⁴⁾, 매년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40~60%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신고액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낮았음³⁵⁾.

FDI 신고액 및 도착액

(단위: 백만\$, %)

연 도	신고액(A _t)	도착액(B _t)	B _t /A _t	B _t /A _{t-1}
2020	20,747	11,534	55.6	-
2021	29,513	17,937	60.8	86.5
2022	30,445	18,220	59.8	61.7
2023	32,714	19,561	59.8	64.3
2024	34,569	15,196	44.0	46.5
2025(4. 16. 기준)	7,064	4,391	62.2	55.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금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의 FDI도 통상 당해연도의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타나지만, 투자계획서상 연차별 배분된 투자액이 실제로 전액 도착하고 있어 사업 관리상 차질은 없다는 설명임.

34) 통계상 필연적으로 도착금액은 신고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 당초 통계를 신고 금액과 도착금액으로 나눠 수집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고, 신고 이후 실투자가 이뤄지는 데까지는 통상 1년 내외의 시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역대최대…도착액은 11년 만에 ‘최저’”, 2024. 4. 2. 뉴스핌
자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402000168>

35)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역대 최대’…그런데 막상 받은 금액은?”, 2024. 10. 2. 경향신문
자료: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21611001#c2b>

2019년 이후 현금지원 사업에 따른 FDI 도착 현황

연도	신청 기업수 (개)	지원 기업수* (개)	외국인투자금액 (백만불)			현금지원액 실적행액 (백만원)		
			신고액	도착액 (해당 연도말)	도착액 (2025. 3월말)	합계	국비	지방비**
2019	3	2	60	-	60	6,018	6,018	-
2020	4	3	366	102	211	35,667	24,600	11,067
2021	11	10	541	381	541	105,510	79,124	26,386
2022	10	8	433	48	204	69,180	50,000	19,180
2023	8	7	372	251	292	62,143	50,000	12,143
2024	16	10	919	614	627	221,673	200,000	21,673
2025. 3.	3	2	49	49	49	110	110	-

* 지원기업수는 해당년도 국비 실적행 대상기업 기준

** 지방비는 해당 지원기업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 중 실적행(2024년말 기준) 내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추경안에 따른 투자보조금이 단순히 연내에 집행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고된 금액을 조속하게 투자받아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 심사단계에서부터 투자계획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투자계약 등에서 보조기업의 투자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③ 국내복귀기업의 조속한 투자 이행 및 사후관리 필요

내역사업인 ‘국내복귀투자보조’는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금액 및 이전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은 1,04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최근 각국의 보호 무역기조 강화 및 리쇼어링(Reshoring) 촉진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는 동 사업 예산을 2020년 200억원에서 2025년 1,04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액해왔음.

그런데 미국 신정부 출범 후 상호관세 부과조치 등으로 인해 중국,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등 해외 진출 기업들이 직접적인 손실 가능성에 직면하게 됨.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공급망 조정 및 국내복귀 필요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동 사업의 제1회추경안을 200억원(19.1%) 증액한 1,245억원으로 편성함.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의 기업규모별 국비 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지원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합계	
	기업수	보조액	기업수	보조액	기업수	보조액	기업수	보조액
2019	-	-	-	-	-	-	-	-
2020	-	-	2	11,472	2	8,528	4	20,000
2021	-	-	5	17,229	5	23,317	10	40,546
2022	-	-	6	32,959	6	24,041	12	57,000
2023	-	-	5	38,552	3	18,448	8	57,000
2024	-	-	6	44,861	11	55,139	17	100,000
2025.3.	-	-	1	7,606	2	2,692	3	10,299

주: 매년 신규 투자기업(선금 70%) 및 투자 완료기업(잔금 30%)에 대한 지원이 각각 이루어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국내복귀기업 증가 추세 뿐만 아니라 관세조치 등으로 공급망 재편성이 촉진되고 있으므로, 추경안에 따라 동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국내 투자를 유치·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현재 예상되는 신규 수요에 더해 200억원 내외의 추가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추경안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임.

국내복귀투자보조 사업 예상 수요(국비 기준)

	'24년 미교부*	정산예정*	신규수요(예상)**	합계
'25년 예상 수요	103억원 (3개사)	110억원 (6개사)	889억원 (8개사)	1,102억원 + 200억원 내외

* 심의위원회 의결 후 1차 보조금(70%) 교부, 투자기간 종료 후 정산 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교부(30% 이내)

** 신규수요(예상)는 유턴의향기업의 투자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예상한 금액이므로 실제 투자금액, 업종, 지역, 고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만,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는 90일(4.9.~7.8.)간 유예 중³⁶⁾이므로, 유예된 국가에 진출한 기업은 국내복귀 여부를 조속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투자보조금만으로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추경안을 연내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6) “수없이 바뀐 ‘트럼프 관세’, 뭐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관세백과]”, 2025. 4. 19., 서울경제
자료: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L08MRY6>

그리고 동 사업은 산업부 고시에 따라 보조금 신청 후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³⁷⁾. 즉, 투자유치 후 실제 투자가 완료되기까지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같이 추경안 편성·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조속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투자계획 이행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7)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투자보조금의 신청) ⑨ 제4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필증교부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신청일) 등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시장상황, 기타 기업의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거나 추가적인 투자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투자기간을 정할 수 있다.

9. 산업단지환경조성(지특회계):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 검토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①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은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후산단을 청년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3,313억 7,8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511억원(15.4%) 증액된 3,824억 7,800만원이 편성됨.

산업단지환경조성 추경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산업단지 환경조성	397,197	397,197	331,378	382,478	51,100	15.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②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 검토 및 면밀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 병행 필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관련 제1회 추경안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내역사업³⁸⁾에 ‘청년친화형 공용편의시설’ 내내역사업 50억

³⁸⁾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

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 내내역사업 48억원 및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내내역사업 1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며, ‘스마트그린산단촉진’ 내역사업³⁹⁾에 ‘AX 실증산단 구축’ 내내역사업 4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산업단지환경조성 추경 상세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청년친화형 공용편의시설(신규)	-	5,000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증액)	10,800	4,800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증액)	1,700	1,300
스마트그린산단촉진	AX 실증산단 구축(신규)	-	40,000
합 계		12,500	51,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내역사업에 속하는 ‘청년친화형 공용편의시설’ 사업은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려는 사업이고,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 사업은 산단 내 노후화된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노후산단을 청년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기준 ① 산단환경개선펀드, ② 휴폐업공장리모델링, ③ 혁신지원센터구축, ④ 청년문화센터건립, ⑤ 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 ⑥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⑦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의 7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39) 2025년도 본예산 기준 ① 통합관제센터, ② 스마트물류플랫폼, ③ 스마트제조고급인력 양성, ④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 ⑤ 지역특성화제조기반구축의 5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이며,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사업은 브랜드산단⁴⁰⁾을 대상으로 랜드마크 건립·조성을 위한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내역사업 추정 상세 내용

내내역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청년친화형 공용 편의시설	○ (예산안) 5,000 백만원 ❶ 주차편의복합건물 5개소(공모) x 200백만원 (개소당 4년간 최대 50억원 국비지원) ❷ 임대기숙사 5개소(공모) x 200백만원 (개소당 4년간 최대 70억원 국비지원) ❸ 다목적 체육관 5개소(공모) x 200백만원 (개소당 4년간 최대 70억원 국비지원) ❹ 열린 문화광장 5개소(공모) x 400백만원 (개소당 3년간 최대 20억원 국비지원) - 국비 70%, 지방비·참여기업 등 매칭 30% 이상(부지, 건축비 등)
	○ (내용)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유입을 촉진 ❶ (주차편의복합건물) 고질적인 산단 주차난 해소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건축물 건립비 지원 * (예) 1층은 카페, 식당,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 2층 이상은 주차장 ❷ (임대기숙사) 산단 근로자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기숙사 건립비 지원 ❸ (다목적 체육관) 산단 내 다목적(체육, 여가시설) 체육관 건립비 지원 ❹ (열린 문화광장) 산단 내 활용도가 낮은 공원 등을 리모델링하여 휴식·축제·교류공간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문화광장 조성

40) 산업단지를 상징하는 문화테마공간, 산업 라키비움 조성 등 기존의 일상공간을 문화로 재창조하여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41) 2025년도 본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10,800백만원 편성·집행 중임.

<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 10,800백만원 >

- 문화를담은산단 : 100백만원 × 20개 × 3개소(25. 3. 구미·창원·완주 선정완료)= 6,000백만원
- 기타산단: 40백만원 × 10개 × 12개소(공모중) = 4,800백만원

내내역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 ⁴¹⁾	○ (예산안) 4,800 백만원 * 12개 산단(공모) x 10개 기업 x 40백만원 (단년도 지원) - 국비 70%, 지방비·참여기업 등 매칭 30% 이상 ○ (내용) 산단 내 노후화된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지자체 등에서 관할지역 산단 내 10개사 단위로 중소기업 모집 후 사업공모 신청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⁴²⁾	○ (예산안) 1,300 백만원 * 2개 브랜드산단(창원, 완주) x 650백만원 (개소당 4년간 최대 189억원 국비지원) - 국비 60%, 지방비·참여기업 등 매칭 40% 이상 ○ (내용) 브랜드산단* 대상 랜드마크 건립·조성을 위한 건축비 지원 * '25.3월 산업·문체·국토부 합동공모를 통해 구미, 창원, 완주 3개 산단 선정 → '25년 본예산은 구미 대상 랜드마크 조성 지원 예산만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위해 21개 스마트그린산단⁴³⁾을 지정하여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촉진’ 내역

42) 2025년도 본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1,700백만원 편성·집행 중임.

- <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 1,700백만원 >
- 랜드마크건립 : 650백만원 x 1개(구미) = 650백만원
 - 문화브랜딩 : 350백만원 x 3개(구미·창원·완주) = 1,050백만원

43) 2025년 4월 현재 총 21개 산단 지정·운영 중

지정연도	산단수	대상 산업단지(국:국가산단, 일:일반산단)
2019	4	반월시화(국), 경남창원(국), 인천남동(국), 경북구미(국)
2020	3	광주첨단(국), 전남여수(국), 대구성서(일)
2021	3	울산미포(국), 부산명지녹산(국), 전북군산(국)
2022	5	충북청주(일), 충남천안(일), 경북포항(국), 전남대불(국), 대전(일)
2023	3	인천주안부평(국), 전남광양(국), 부산신평장림(일)
2024	3	강원후평(일), 경남사천(일), 전북전주(일)

사업에 속하는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은 지원사업 유형별로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 선도를 위한 실증산단 10개소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 추경 상세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예산안) 40,000 백만원 * 10개소(공모) x 4,000백만원 (개소당 3년간 최대 140억원 국비지원) - 국비 지원금액의 40% 이상 지방비·참여기업 등 매칭																					
○ (내용) 유형별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실증산단 10개소 구축 지원 < AX 실증산단 구축 유형(안)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지원사업 유형(안)</th><th>사업내용</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산단 AX</td><td>5G 특화망 실증</td><td>▶ 고속통신 기반의 AI 솔루션(자율제조, 물류관제 등) 최적화 지원을 위한 산단 공용 5G 특화망 구축</td></tr> <tr> <td>디지털트윈 실증</td><td>▶ 산단 내 기반시설, 공간정보, 기업정보 등을 담은 디지털트윈 산단을 구현하고 AI 기반 산단 관리 추진</td></tr> <tr> <td rowspan="5">기업 AX</td><td>공정혁신시뮬레이션</td><td>▶ 입주기업 제조 전주기(설계~성능시험) 시뮬레이션, AI 최적화 지원을 위한 H/W, S/W 인프라 및 센터 구축</td></tr> <tr> <td>AX 종합지원센터</td><td>▶ 제조AI 컨설팅, 데이터센터 연계 기술지원 등 입주기업 AX를 위한 토탈 패키징 지원센터 구축</td></tr> <tr> <td>제조 AI 오픈랩</td><td>▶ 제조AI 솔루션기업, 수요기업 등이 AI 기술 및 로봇 도입 솔루션의 도입·실증에 활용가능한 개방형 Lab 공간 구축</td></tr> <tr> <td>LLM 기반 제조 AI 솔루션 실증</td><td>▶ 주력산업 특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제조현장 응용 서비스 실증</td></tr> <tr> <td>AI 표준제조공정모듈</td><td>▶ 산단별 표준형 AI 제조공정 데모공장 구축,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산단 내 AI 팩토리 확산 지원</td></tr> </tbody> </table>			지원사업 유형(안)		사업내용	산단 AX	5G 특화망 실증	▶ 고속통신 기반의 AI 솔루션(자율제조, 물류관제 등) 최적화 지원을 위한 산단 공용 5G 특화망 구축	디지털트윈 실증	▶ 산단 내 기반시설, 공간정보, 기업정보 등을 담은 디지털트윈 산단을 구현하고 AI 기반 산단 관리 추진	기업 AX	공정혁신시뮬레이션	▶ 입주기업 제조 전주기(설계~성능시험) 시뮬레이션, AI 최적화 지원을 위한 H/W, S/W 인프라 및 센터 구축	AX 종합지원센터	▶ 제조AI 컨설팅, 데이터센터 연계 기술지원 등 입주기업 AX를 위한 토탈 패키징 지원센터 구축	제조 AI 오픈랩	▶ 제조AI 솔루션기업, 수요기업 등이 AI 기술 및 로봇 도입 솔루션의 도입·실증에 활용가능한 개방형 Lab 공간 구축	LLM 기반 제조 AI 솔루션 실증	▶ 주력산업 특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제조현장 응용 서비스 실증	AI 표준제조공정모듈	▶ 산단별 표준형 AI 제조공정 데모공장 구축,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산단 내 AI 팩토리 확산 지원
지원사업 유형(안)		사업내용																			
산단 AX	5G 특화망 실증	▶ 고속통신 기반의 AI 솔루션(자율제조, 물류관제 등) 최적화 지원을 위한 산단 공용 5G 특화망 구축																			
	디지털트윈 실증	▶ 산단 내 기반시설, 공간정보, 기업정보 등을 담은 디지털트윈 산단을 구현하고 AI 기반 산단 관리 추진																			
기업 AX	공정혁신시뮬레이션	▶ 입주기업 제조 전주기(설계~성능시험) 시뮬레이션, AI 최적화 지원을 위한 H/W, S/W 인프라 및 센터 구축																			
	AX 종합지원센터	▶ 제조AI 컨설팅, 데이터센터 연계 기술지원 등 입주기업 AX를 위한 토탈 패키징 지원센터 구축																			
	제조 AI 오픈랩	▶ 제조AI 솔루션기업, 수요기업 등이 AI 기술 및 로봇 도입 솔루션의 도입·실증에 활용가능한 개방형 Lab 공간 구축																			
	LLM 기반 제조 AI 솔루션 실증	▶ 주력산업 특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제조현장 응용 서비스 실증																			
	AI 표준제조공정모듈	▶ 산단별 표준형 AI 제조공정 데모공장 구축,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산단 내 AI 팩토리 확산 지원																			
※ 지자체가 사업공모시 지원사업 유형을 2~3개 이상 혼합하여 제시하는 것도 가능																					
⇒ 구축 유형을 주제로 ❶AX 마스터플랜 수립(1차년도), ❷AX 인프라 구축(1~3차년도), ❸기업 AX 도입 실증(1~3차년도), ❹AX 얼라이언스 구축·운영(1~3차년도) 등을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인력 기피, AX 역량부족 등을 겪고 있는 산단 내 수출기업들은 최근 美 관세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고 AX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단 입주기업의 제조·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2/3, 고용의 1/2을 담당⁴⁴⁾하는 국가와 지역경제의 중추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적기에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번 추경은 산업단지 내 청년 유입 촉진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AX 전환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⁴⁵⁾에서 우리 산단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급성의 측면에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9조⁴⁶⁾에서는 ‘경기침체,

44) 2023년말 기준 ▲생산 62.6%(산단 1,249조원 / 제조업 1,996조원), ▲수출 66.9%(산단 4,199억불 / 제조업 6,282억불), ▲고용 49.9%(산단 2,073천명 / 제조업 4,157천명) 산단 담당

45) “디지털 전환 다음 트렌드는 ‘AX’라는데… [AI로 다 바꿔라]”, 매일경제, 2024.7.26.

46)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추경은 본예산 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재정 대응이라는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친화형 공용 편의시설' 사업,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사업 등은 편의시설 건축,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청년인력 등을 유인하려는 것으로서 정책 효과가 간접적이며 완공에 수년이 소요⁴⁷⁾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둘째, 매칭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면밀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사업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추경안에 포함된 각 사업은 국비 부담 외에 부지, 건축비 등에 대해서 30~40% 정도의 지방비 또는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음. 특히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의 경우 2025년은 40억원씩 총 10개소를 지원하고 1개소당 3년간 최대 140억원(3년간 10개소 총 1,400억원 지원) 국비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매칭 비율(국비 약 70%)을 고려할 때 2025년의 경우 최대 16억원, 3년간 총 56억원을 부담할 수 있는 지자체 10개소가 선정되어야 함.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47) '청년친화형 공용 편의시설' 사업,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사업의 경우 각 개소당 4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동 사업이 이번 추경으로 편성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도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절차들은 사업추진의 지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향, 재원 마련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